

의안번호	제2854호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의결사항	
------	--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4. 11. 14.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854호
----------	--------

제출연월일: 2024. 11. 14.
제출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2019. 12. 30. 조직개편 이후 3국 체제 운영이 안정화됨에 따라 부군수에게 집중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직 일부를 소관 국장, 소장으로 분산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장: 부군수 → 업무 소관 국장·소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성별영향평가(복지지원과)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35643(2024. 9. 6.)]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4-1426호

가) 예고기간: 2024. 9. 10. ~ 2024. 9. 30.(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부군수”를 “업무 소관 국장”으로, “국장·담당관·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2조(「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부군수가”를 “업무 소관 국장이”로 한다.

제3조(「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소관 국장이”로 한다.

제4조(「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소관 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의 개정)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부군수”를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제6조(「고성군 온종일 돌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온종일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군수가”를 “업무 소관 국장이”로 한다.

제7조(「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의 개정)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부군수로 하고”를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로 한다.

제8조(「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소관 국장이”로 한다.

제9조(「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소관 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업무 담당 부서장

제10조(「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의 개정)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군수로 하며”를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

제11조(「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소관 국장이”로 한다.

제12조(「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군수가”를 “업무 소관 국장이”로 한다.

제13조(「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의 개정)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군수가”를 “업무 소관 국장이”로 한다.

제14조(「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소관 국장이”로 한다.

제15조(「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군수가”를 “업무 소관 국장이”로 한다.

제16조(「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군수가 되고”를 “업무 소관 국장이”로 한다.

제17조(「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소관 국장이”로 한다.

제18조(「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고성군 부군수가”를 “업무 소관 국장이”로 한다.

제19조(「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개정)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소관 국장이”로 한다.

제20조(「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부군수로 하고”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기획예산담당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21조(「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급식업무”를 “공공급식업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협의회 설치) ①·② (생략)</p> <p>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p>1. 당연직 위원 : <u>부군수</u>,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u>국장·담당관·과장</u>, <u>교육지원청·경찰서</u> 임직원</p> <p>2. (생략)</p> <p>④ ~ ⑥ (생략)</p>	<p>제8조(협의회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u>업무 소관 국장</u> ----- <u>부서장</u>----- -----</p> <p>2. (현행과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제2조(「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전문위원회) ①·② (생략)</p> <p>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u>부군수가</u> 되고,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별</p>	<p>제4조(전문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업무 소관 국장이</u> ----- ----- ----- -----.</p>

법령에서 규정한 당연직 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외부 위원 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⑤ (생략)	----- ----- -----. ④·⑤ (현행과 같음)
--	--

제3조(「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u>부군수가</u> 된다. ③·④ (생략)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업무 소관 국장</u> <u>의</u>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조(「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u>부군수가</u>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u>국장</u> 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업무 소관 국장이</u> ----- ----- -----. ③ ----- ----- <u>부서장</u> ----- -----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노인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2. (생략) 3. 관계 공무원(다만, <u>부군수</u> 및 보육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5. (생략) ③·④ (생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 <u>업무 소관 국장</u> ----- ----- ----- 4.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고성군 은종일 돌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2조(협의체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u>부군수</u> 가 되고, 위	제12조(협의체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업무 소관 국장이</u> -

<p>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1. ~ 4. (생략) ③·④ (생략)</p>	<p>----- -----.</p> <p>1.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p>
---	--

제7조(「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u>부군수로</u> <u>하고</u>,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략)</p>	<p>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업무 소관</u> <u>국장이 되고</u>,----- -----. ③ (현행과 같음)</p>

제8조(「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9조(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위원장은 <u>부군수가</u> 되 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③ ~ ⑥ (생략)</p>	<p>제9조(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업무 소관 국</u> <u>장이</u> ----- -----. ③ ~ ⑥ (현행과 같음)</p>

제9조(「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u>부군수가</u>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 3. (생략)</p> <p>4. <u>보건소장</u></p> <p>5. ~ 9. (생략)</p>	<p>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업무 소관 국장이</u> ----- -----.</p> <p>③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보건업무 담당 부서장</u></p> <p>5. ~ 9. (현행과 같음)</p>

제10조(「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② (생략)</p> <p>③ 위원장은 <u>부군수로 하며</u>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1. <u>행정복지국장,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u></p> <p>2. ~ 5. (생략)</p> <p>④ (생략)</p>	<p>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u> ----- -----.</p> <p>1. <u>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u></p> <p>2. ~ 5.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제11조(「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u>부군수가</u>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략)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업무 소관 국장이</u> - -----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② (생략) ③ 위원장은 <u>부군수가</u>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2. (생략) ④·⑤ (생략)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u>업무 소관 국장이</u> - ----- -----. 1.·2.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3조(「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u>부군수가</u>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업무 소관 국장이</u> -----

<p>해양수산과장, 농촌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 3. (생략)</p> <p>③·④ (생략)</p>	<p>-----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	---

제14조(「고성군 상쟁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4조(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u>부군수가</u>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생략)</p>	<p>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업무 소관 국장이</u> -----.</p> <p>③ (현행과 같음)</p>

제15조(「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u>부군수가</u>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1. ~ 3.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업무 소관 국장이</u>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제16조(「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u>부군수가</u>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 ③ ~ ⑤ (생략)	제4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업무 소관 국장이</u>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u>부군수가</u>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 이 된다. ④ ~ ⑦ (생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u>업무 소관 국장이</u>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 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 장은 <u>고성군 부군수가</u> 되고 위 촉직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위 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업무 소관 국장이</u> ----- ----- -----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	----------------

제19조(「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u>부군수가</u> 된다. ③ ~ ⑥ (생략)	제5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업무 소관 국장이</u>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장은 <u>부군수로 하고</u>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생략) ⑤ 당연직 위원은 <u>기획예산담당관, 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과장, 녹지공원과장, 농촌정책과장</u> 으로 한다.<2021.07.05. 조 26654><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⑥ (생략)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u> -----. ④ (현행과 같음) ⑤ ----- <u>기획예산담당관</u> ----- -----. -----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u>부군수가</u>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u>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급식업무</u> 부서장, 교육청소년과장,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급식업무 부서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사무소장이 된다.</p> <p>④ (생략)</p>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농업기술센터소장이</u> ----- -----.</p> <p>③ ----- --- <u>공공급식업무</u> ----- ----- ----- ----- -----.</p> <p>④ (현행과 같음)</p>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